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636

제출년월일 : '97.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사유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97. 5.31)이 제정·공포되고 경기도로 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등 심의(안 제2조)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등 분야별 간사를 둠.(안 제3조)

○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 상황실장은 총무국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장의 대표자로 함. (안 제4조)

□ 참고사항

○ 근 거 법 령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 참 고 자 료 :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표준안
(경기도 민방 36100-1015, '97. 9. 2)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안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안산경찰서장
6. 안산교육장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담당관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